

『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7월 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7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7월 23일

제1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선산출장소장 황필섭

나. 제안이유

- 선산문화회관 내 정비·교체된 시설과 장비에 맞추어 조례를
현행화 하고 사용료 부과기준을 현실화 하며
-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 관리·운영 및 비용 지원
근거를 신설함.
-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고, 길고 복잡한 문장을
간결하게 하는 등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시설의 위탁 및 비용지원 근거 신설(안 제5조의2)
- 시설 및 장비 관련 조항 정비 및 사용료 부과기준 현실화(안 별표)
 - 1) 종전 예식장 관련 사용료 삭제 및 소회의실 관련 사용료 신설
 - 2) 대강당 시설의 이용시간 구분 추가 및 인상(1일 사용 신설)
 - 가) 1일 (08:00 ~ 18:00) : 100,000원
 - 나) 오전(08:00 ~ 12:00) : 40,000원 → 50,000원
 - 다) 오후(13:00 ~ 17:00) : 50,000원 → 60,000원
 - 라) 야간(18:00 ~ 22:00) : 60,000원 → 70,000원
 - 3) 변경된 장비의 사용료 정비(영사기 → 프로젝터)
-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(안 제3조)
- 사용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명확화(안 제13조)
- 입장 제한대상을 쉽게 풀어쓰고 차별적 용어를 정비(안 제14조)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104조, 제136조, 제139조, 제144조
 - 2)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제4조, 제5조, 제6조
 - 3)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
 - 4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용 우

- 본 『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,
 - 시설의 위탁 및 운영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, 시설사용료 부과기준의 현실화 및 사용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명확화, 각종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써,
 - 노후화(26년)된 선산문화회관의 내부 리모델링으로 교체된 시설·장비에 맞게 조례를 현실화 하고,
조례제정('89)시 책정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서,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